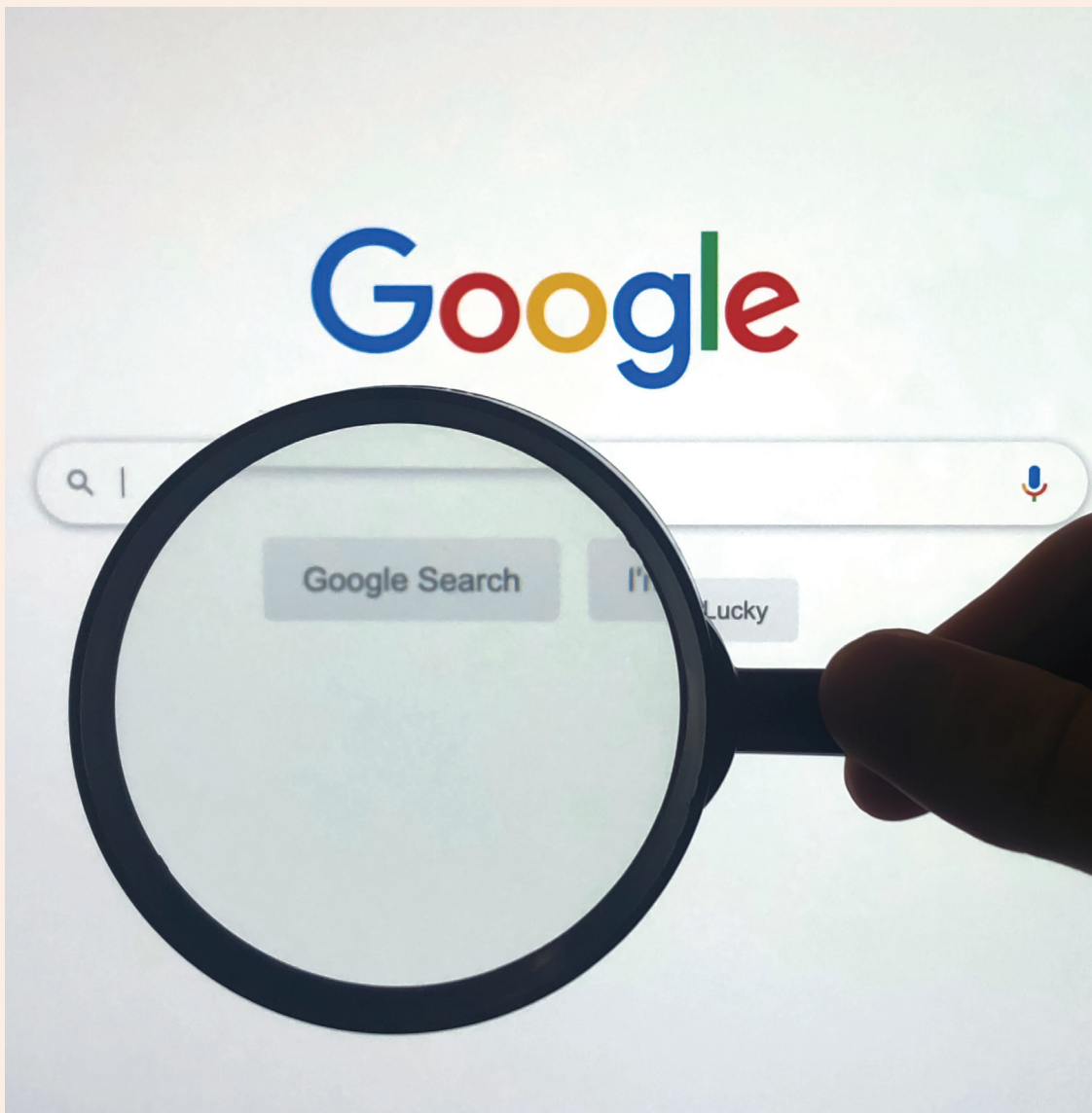


02

‘잊힐 권리’ 관련 최근 소송 동향 및 이슈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Recht auf Vergessenwerden)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내린 Google v. Spain 판결¹⁾이다.

이 사건은 스페인의 변호사인 곤잘레스(González)가 12년 전에 자신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알리는 법원공고문이 실린 신문 기사를 삭제해 줄 것과 구글의 검색창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위 신문기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담긴 검색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청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곤잘레스는 과거의 경매정보는 더 이상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구글의 검색결과 또한 자신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를 주장하였다.

곤잘레스는 2010년에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원(AEPD)에 구제를 신청하였다.²⁾ 개인정보보호원은 신문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결과 목록에서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스페인 고등법원에 제소하였고, 스페인 고등법원은 위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된 1995년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의 관련 규정(제6조 제c항)³⁾이 그 이후에 등장한 인터넷 검색엔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문제로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가 구글 검색결과와 삭제를 요구할 권리, 즉 잊힐 권리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이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개인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 공표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접근이 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언론사의 아카이브에 담긴 원 정보의 삭제 혹은 접근차단을 요구할 권리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에 관한 찬반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판결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로 인해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오랜 과거의 기록이 쉽게 재소환되어 대

1) Google Spain E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ECJ C-131/12, 2014, 5. 13, 선고).

2) 곤잘레스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페이지들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의 보호를 위해 검색엔진이 이용할 수 있는 툴(tool)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더 이상 경매공고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제6조(개인정보의 상태에 관한 원칙) (c) 개인정보는 수집 혹은 이후 처리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adequate) 관련이 있어야 하며(relevant) 그리고 (목적 달성에) 과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not excessive).

중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생겨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해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권(the right to privacy)과 개인정보보호권(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을 신장시킨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판결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판결이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의 사적 검열을 허용하여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혹평한다.⁴⁾

이하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잊힐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던 2014년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논거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유럽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한 주요 소송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떤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도출해보기로 한다.

2. 유럽사법재판소

Google v. Spain 판결의 '잊힐 권리' 인정 논거

가) 잊힐 권리 논의의 배경 :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과거 기록의 소환

유럽에서 온라인 상의 잊힐 권리를 새로운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의 초안을 내놓으면서부터이다. 이 초안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거나 정보처리의 합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었다. 초안 제17조는 제목에서 이 권리를 "잊힐 권리 및 삭제권"(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이라고 명명하였다.⁵⁾ 결국, 잊힐 권리는 삭제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잊힐 권리의 제안을 통해 대응하고자 했던 문제 상황은 이러하다. 즉, 인터넷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인해 이미 대중의 기억과 관심으로부터 사라졌던 오래 전 과거의 개인에 관한 기록이 쉽게 소환되어 다시 대중의 이목을 받게 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이 등

4) 박경신 (2014. 6).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주최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서울: 엔스페이스이벤트를

5) 2016년에 제정된 현행 GDPR 제17조는 제목을 "삭제권(잊힐 권리)"로 표기하고 있다. '삭제권'(Right to erasure)을 먼저 내세우고 괄호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부기하고 있다.



장한 것이다. 바야흐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진 디지털 흔적들이 언제든지 쉽게 노출되어 대중의 기억을 되살리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은 다른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난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요구나 이익을 담는 개념적 그릇이 ‘잊힐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이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잊힐 권리의 주장에 대해 일반 대중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기초한 항변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 합법적으로 공표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수없이 복제되어 도처에 편재하게 된 지금의 온라인 정보환경에서 과연 잊힐 권리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논점들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나 2014년 Google v. Spain 판결의 쟁점과 논거

이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했던 쟁점은 세 가지였다. 즉, ① 구글의 정보처리 서버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이 구글 스페인에 적용되는지 여부⁶⁾ ② 인터넷의 검색엔진 운영자

6) 이는 지침의 영토적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를 처리하는 물리적 서버가 유럽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색엔진의 운영자가 회원국의 영토 내에 지사를 두고서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광고공간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유럽연합의 법은 그러한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⁷⁾ ③ 개인정보보호지침 하에서 개인(정보주체)은 웹에 공표된 자신에 관한 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접근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즉 검색결과 링크삭제청구권(‘잊힐 권리’)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여기서는 ③의 쟁점에 초점을 맞춘다.

③의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3자의 웹페이지에 공표된 정보주체의 개인적인 정보가 설명 합법적으로 공표된 것이고 또 정보주체에 관한 진실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생각하기에 그 정보는 자신에게 해로울지 모른다거나(might be prejudicial) 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망각 속으로 사라지기를 원할 때 그 정보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보를 검색엔진이 색인하지 못하도록(또는 이름으로 검색된 결과의 목록에서 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잊힐 권리’)가 지침상의 삭제청구권이나 처리거부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⁸⁾

우선,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7조와 제8조가 각각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사생활권과 개인정보보호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오늘날의 검색엔진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인해 이들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웹사이트 발행자를 문제삼지 않고 바로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검색결과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엔진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개인정보보호권의 침해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개인의 이름을 넣어 검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검색엔진 운영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7) 우선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엔진의 행위, 즉 제3자가 웹상에서 공표한 정보를 찾아내어(locating) 그것을 자동으로 색인하고(indexing) 일시적으로 저장한(storing) 다음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making available)이 지침 제2조(정의) (b)항의 ‘개인정보의 처리’(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검색엔진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검색엔진이 수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활동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아닌 검색엔진 운영자이고, 따라서 그는 지침 제2조 (d)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에 해당한다. 만일 검색엔진 운영자가 제3자의 웹페이지에 공표된 개인정보에 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2조 (d)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배제한다면, 이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넓게 정의해서 정보주체를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ECJ C-131/12, par. 33-34).

8) 이 쟁점에 대해 그리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잊힐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지침 제12조 (b)항과 제14조 (a)항은, 문제의 정보처리가 지침을 위반했거나 또는 정보주체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한 압도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만 정보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단순히 정보주체가 생각하기에 그 정보처리가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거나 혹은 그 정보는 망각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정보주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처리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결과를 통해 인터넷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개관할 수 있게 해주고 – 이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방대한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데, 만일 검색엔진이 없었더라면 상호 연결될 수 없었거나 매우 어려웠을 그런 정보들이다 – 그리하여 다소 상세한 개인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그리고 검색결과 목록에 담긴 정보는 현재의 인터넷과 검색엔진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해 실로 도처에 존재한다.”⁹⁾

결론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결과와 링크 정보가 “처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inadequate), 연관성이 없거나(irrelevant) 또는 과도한(excessive) 때”에 정보주체는 검색결과와 링크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잊힐 권리의 행사요건을 위와 같이 설정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침 제6조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상태에 관한 원칙(principle relating to data quality)을 고려한다면, 설령 처음에는 정확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보가 원래의 처리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그 정보가 처리목적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경과된 시간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연관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한 것으로 보일 때에도 그러하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지침 제12조 (b)항에 근거하여 삭제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합법적으로 발행한 웹페이지에 개인에 관한 진실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고 그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가 이름으로 검색한 검색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검색결과가 현 시점에서 주어진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검색엔진 운영자가 수행하는 정보처리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적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연관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검색결과가 지침 제6조의 개인정보의 상태에 관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검색결과는 삭제되어야 한다.”¹⁰⁾

9) ECJ C-131/12, par. 80.

10) ECJ C-131/12, par. 92-94.

3. 유럽사법재판소 잊힐 권리에 관한 후속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4일 잊힐 권리와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하나는 Google v. CNIL 판결¹¹⁾이고, 다른 하나는 GC et al v. CNIL 판결¹²⁾이다. 전자의 판결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판결이었는데, 검색엔진과 관련한 잊힐 권리의 지역적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쟁점을 안고 있는 판결이다. 이에 비해 후자의 판결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판결이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잊힐 권리의 적용 범위를 더욱 분명히 한 판결로서 특히 정보주체인 개인이 어떤 요건 하에서 검색결과 목록에서 링크를 지울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기 때문이다.

가) Google v. CNIL 판결의 쟁점과 판단 : 잊힐 권리의 지리적 적용 범위

2015년 프랑스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¹³⁾는 구글에 공식적인 통지문을 보내 정보주체의 검색결과 링크삭제(de-listing)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링크삭제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도메인네임(domain name)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도메인네임에 적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즉 유럽 시민의 잊힐 권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유럽연합 외의 다른 지역에도 확장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구글은 검색엔진에 특정 지역 접속차단(geo-blocking) 기능을 도입하여 유럽 시민의 신청에 따라 링크가 제거된 웹페이지 정보는 유럽 사용자들만이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CNIL은 유럽 이외 지역의 사용자들도 볼 수 없도록 요구한 것이다.

구글은 위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CNIL은 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구글은 이에 불복하여 프랑스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잊힐 권리(검색결과 링크삭제권)의 지리적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 선결판단을 구하기 위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이 선결판단 청구사건에서의 쟁점은, 유럽 시민의 링크삭제 신청을 구글이 받아들이는 경우 링크삭제는 자동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유럽 시민의 잊힐 권리(검색결과 링크삭제권)는 유럽연합 역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 판단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1) ECJ C-507/17 (2019. 9. 24. 선고).

12) ECJ C-136/17 (2019. 9. 24. 선고).

13)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첫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2018년 5월에 시행된 현행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17조(삭제권; 잊힐 권리)의 해석에 있어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밖의 많은 국가들이 검색결과 링크삭제권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접근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이의 균형은 세계적으로 지역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유럽사법재판소는 “현 시점에서(currently)” 유럽연합법(EU law; GDPR)은 링크삭제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검색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링크삭제 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진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만 아니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검색결과를 삭제해야 할 의무는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넷째, 유럽사법재판소는 각 회원국의 법원이나 개인정보감독기구(DPA)가 세계적 적용의 링크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현재의 유럽연합법(GDPR)은 세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세계적 적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it also does not prohibit such a practice)”고 판시하고 있다.¹⁴⁾ 즉, 각 회원국의 법원이나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자신의 국내법적 기준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권과 정보의 자유를 형량한 결과 적절하다면

14) ECJ C-507/17, par. 72.

(where appropriate)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세계적 적용의 링크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세계적 적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존재하게 되었다.

나 GC et al v. CNIL 판결의 쟁점과 판단 : 민감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의 적용

이 사건은 4명의 프랑스인이 각각 별도로 구글 검색창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검색결과와 링크삭제를 신청하였으나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 검색결과와 링크가 연결하는 뉴스 기사들에는 이들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프랑스인들은 구글의 거부에 대하여 프랑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이들 각 사안에서는 공공의 알 권리가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면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4인의 원고들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에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잊힐 권리의 실제적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선결판단 청구사건).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핵심적인 쟁점은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혹은 철학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제8조¹⁵⁾ 및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9조¹⁶⁾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구글이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의 민감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검색결과 링크를 보여주기 전에 구글은 GDPR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예외의 합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이다. 즉,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행하는 정보처리의 성격에 따라서 처리자들 사이에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는지다.

15)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8조(특수유형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인종적 혹은 민족적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적 혹은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드러내는 개인정보, 그리고 건강 혹은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제1항),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비롯하여 여러 상황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었다.

16) 개인정보보호지침을 2018년 5월부터 대체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도 제9조(특수유형의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인종적 혹은 민족적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적 혹은 철학적 신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을 드러내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금지되며, 또한 유전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의 생체식별정보, 건강 관련 정보, 혹은 자연인의 성생활이나 성적 지향성에 관한 정보의 처리는 금지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비롯하여 여러 상황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이 행하는 검색엔진 운영자로서의 정보처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감정보의 처리기준에 관한 GDPR 제9조는 관련 정보주체가 검색결과 링크삭제를 신청한 이후에야 비로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확인한 판시사항이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뿐만 아니라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현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지침(Directvie)과 GDPR은 인터넷 검색엔진이 행하는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해 적용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민감정보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은 검색엔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유럽사법재판소는 민감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검색결과 링크에 대해 민감정보의 처리기준을 사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즉, “검색엔진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운영자가 행하는 정보처리의 특성에 비추어 그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검색엔진이 그 정보처리에 책임을 지는 이유는 제3자가 발행한 웹페이지에 민감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그 웹페이지



로 연결되는 검색결과 링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⁷⁾

넷째, 유럽사법재판소는 “민감정보의 처리기준(GDPR 제9조)은 정보주체가 링크삭제를 신청하는 때에 비로소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작동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¹⁸⁾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정보주체로부터 링크삭제 신청을 받기 전에는 구글은 민감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를 검색결과와 링크로 연결하는 정보처리에 대해 예외의 합법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그렇다면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민감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검색결과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신청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GDPR 제17조(삭제권; 잊힐 권리)를 면밀히 분석한다. 특히, 제17조 제3항에서 “제1항(원칙 금지)과 제2항(예외 허용)은 표현의 자유권과 정보의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GDPR은 한편에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7조와 제8조가 각각 보장하는 사생활권과 개인 정보보호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유럽기본권헌장 제11조가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권(the right of 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에 균형을 맞출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¹⁹⁾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대법원의 잊힐 권리 판결

최근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VerfG)와 연방대법원(BGH)은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유럽사법재판소의 접근 태도와는 다소 다르게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가) 출소한 살인범의 잊힐 권리 인정 연방헌법재판소 판결²⁰⁾

2019년 11월 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37년 전에 살인을 한 범죄자가 출소 후 온라인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잊힐 권리(검색결과 링크삭제권)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1982년에 요트에서 2명을 살해한 범죄자와 관련된 것이다. 1980년대 초,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이 범죄를 다룬 3건의 기사에

17) ECJ C-136/17, par. 45-46.

18) ECJ C-136/17, par. 47.

19) ECJ C-136/17, par. 59.

20) BVerfG 1 BvR 16/13 (2019. 11. 6. 선고).

서 살인범의 성명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1999년에 슈피겔 지는 자신의 뉴스기록물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모든 기사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살인범은 2002년 출소했는데, 2009년 과거 자신에 관한 위 기사들이 온라인에서 계속 노출되어 이용됨으로써 자신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위 디지털화된 기사들은 삭제되거나 익명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슈피겔 지가 뉴스기록물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위 원고(살인범)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뉴스기록물의 형태로 공표하는 것의 부정적인 효과를 기술적 수단을 통해 발행인에게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라고 하급심법원에 지시하였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은 사생활권이 문제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사생활권이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처리 과정이나 알고리즘 때문에 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정보주체인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미디어 출판의 자유와 일반적인 성격의 '인격권', 즉 개인이 여러 대중의 입방아 대상이 되지 않고 대중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개인적 이익을 조화시키는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들 권리가 유럽연합법(GDPR)에서 충분히 조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 연방헌법(Grundgesetz)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이 적용된다고 판시한다.

나 방송 인터뷰 사본에 대한 잊힐 권리 불인정 연방헌법재판소 판결²¹⁾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2014년에 유럽사법재판소가 결정했던 Google v. Spain 사건의 사실관계와 아주 유사하다. 구글 스페인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검색결과와 링크가 원고(곤잘레스)의 명성과 신용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 링크를 삭제하라고 구글에 명령한 것과 유사하게, 이 사건은 온라인 검색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독일의 한 TV채널이

21) BVerfG 1 BvR 276/17 (2019. 11. 6. 선고).



2010년에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와 한 인터뷰가 문제되었다. 이 인터뷰에서 TV 채널은 대표이사가 회사원들에게 ‘비열한 짓’을 했다고 비난하였다. TV채널은 인터뷰 직후 그 인터뷰를 글로 옮긴 사본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원고(대표이사)가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구글의 검색창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목록의 링크가 위 인터뷰 사본이 있는 웹페이지를 연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Google v. Spain 사건과 같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권리는 원고의 사생활권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미디어 출판의 자유권에 기댈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중국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문제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Google v. Spain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꽤 다른 것이었다. 이는 관련 양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원고(대표이사)와 구글 양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 TV채널의 미디어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 효과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달리 Google v. Spain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웹페이지의 내용은 정부의 경매공고문이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형량에 있어서 잊힐 권리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 있었다. 요컨대, 링크가 연결하는 웹페이지의 내용 및 그 성격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만큼 잊힐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다 가족관계를 드러내는 신문기사에 대한 잊힐 권리 불인정 연방헌법재판소 판결²²⁾

이 사건의 원고는 독일 뮌헨의 전 시장(1978년에서 1984년까지 재임)의 아들이며 현재 그의 가족 이름을 딴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독일 슈피겔 지(Der Spiegel)는 1978년 당시 시장에 관한 인물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원고가 시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기사는 잡지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지금도 찾을 수 있다. 원고의 이름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위 기사의 링크가 검색결과 목록의 다섯 번째 페이지에 나타난다. 원고는 위 시장과 부자(父子)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원고의 링크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 관계가 알려진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 즉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보도 기사에 대한 잊힐 권리 불인정 연방대법원 판결²³⁾

2020년 7월 27일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보도기사가 정보주체에게 비록 호의적이지는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적으로 정확한 것이라면, 구글은 그 뉴스 기사의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검색결과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쾰른의 1심 법원은 2017년에 링크 삭제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 법원도 2018년에 항소를 기각하였다.

22) BVerfG 1 BvR 1282/17 (2020. 2. 25. 선고).

23) BGH VI ZR 405/18 (2020. 7. 27. 선고).

이 사건은 자선단체의 상임이사가 관련된 것인데, 2011년에 상임이사는 자선단체가 재정적인 곤란에 처하자 병가를 내었던 적이 있었다. 이 내용을 담은 기사가 그의 성명과 함께 어느 지방신문에 보도되었었다. 구글에서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위 2011년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다. 위 상임이사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하급심법원들과 마찬가지로 링크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위 비판적 기사를 연결하는 링크를 검색목록에서 삭제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항상 개별 사건에서 상충하는 권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6조(기업활동의 자유; freedom to conduct a business) 하에서 검색엔진 운영자(구글)가 갖는 재정적 이익, 일반 대중의 정보의 이익(알 권리), 그리고 기본권 헌장 제11조에 따라 신문발행인이 갖는 표현 및 출판의 자유는 청구인이 기본권 헌장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갖는 링크삭제의 권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인 성격의 건강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에 비해 일반 대중이 자선단체의 재정 상태를 알고자 하는 이익이 더 무게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가 몇몇 사건에서 판시해 온 것과는 달리, 일반 대중의 알 권리에 비해 기본권 헌장 제7조와 제8조가 보장하는 사생활권 및 개인정보보호권이 더 우월한 가치라고 추정하는 해석방식, 즉 검색결과와 삭제가 원칙이고 삭제를 거부하는 것은 예외이며, 삭제 거부에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접근 태도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²⁴⁾ 연방대법원은 오히려, 콘텐츠제공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직접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충하는 양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심사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향후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이의(異義)를 제기하지 않고 내버려 둘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 Johannes Kreile & Jan Weismantel (2020, 8, 19). New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Germany's Federal Court of Justice issues fundamental decision. <Noerr>. URL: <https://www.noerr.com/en/newsroom/news/newsontherighttobeforgotten>

5. 스웨덴과 벨기에 개인정보감독 기구의 잇힐 권리 침해 과징금 부과

가 스웨덴의 과징금 부과 사건

2020년 3월 11일에 스웨덴의 개인정보감독기구(DPA)는 구글에 잇힐 권리와 관련하여 GDPR 위반을 이유로 800만 달러(U.S. \$8 million)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²⁵⁾ 이는 2019년 1월에 프랑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에 5,700만 달러(U.S. \$57 million)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구글에 부과된 두 번째 과징금이다.

2017년에 스웨덴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구글이 정보주체의 잇힐 권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해 감사(audit)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감독기구는 구글의 검색결과 목록에서 많은 수의 링크들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글에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 후 구글이 위 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2018년에 후속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독기구가 인정한 구글의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글은 검색결과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링크를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좁은 해석”(too narrow an interpretation)을 하고 있다. 둘째,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without undue delay) 삭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셋째, 구글이 검색결과 목록에서 링크를 삭제하는 방법론이 잘못되었다.

감독기구는 구글의 잘못된 방법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구글이 검색결과 목록의 한 링크를 삭제할 때, 그 링크가 가리키는 웹사이트에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 통지의 방식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웹페이지 링크가 삭제되었고 또 링크삭제신청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웹페이지를 다른 웹주소로 재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되면 구글의 검색결과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일한 정보가 재발행되는 셈이 되고 잇힐 권리를 실현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²⁶⁾ 이 결정에 대해 구글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25) Sweden DPA (2020. 3. 11). The Swedish Data Protection Authority imposes administrative fine on Google. URL: <https://www.datainspektionen.se/nyheter/the-swedish-data-protection-authority-imposes-administrative-fine-on-google/>

26) Neil Hodge (2020. 3. 13). Swedish watchdog fines Google \$7.6M for GDPR non-compliance. <Compliance Week>. URL: <https://www.complianceweek.com/data-privacy/swedish-watchdog-fines-google-76m-for-gdpr-non-compliance/28599.article>

나 벨기에의 과징금 부과 사건

2020년 7월 14일 벨기에의 개인정보감독기구(DPA)는 구글이 GDPR의 잊힐 권리 규정(제17조)을 위반하여 벨기에 시민의 잊힐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또 링크삭제 신청서에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구글에 60만 유로(€600,000)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²⁷⁾

벨기에의 한 시민이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링크의 제거를 신청하였으나 구글은 이를 거절하였다. 감독기구는 이 링크 중 일부는 일반 대중의 정보의 이익이 커서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신청인은 공적 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문제의 링크들은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다른 링크들은 오래되고 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담고 있어서 신청인의 사회적 명성에 크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어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독기구는 구글의 삭제신청서와 그리고 신청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6. 나가며

2014년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초로 인정한 '잊힐 권리'는 정확히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링크삭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인터넷의 웹에 공표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접근이 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현재 이 권리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17조에서 '삭제권'(right to erasure)의 다른 이름 즉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잊힐 권리가 인정되는 배경에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망각속으로 사라졌던 오랜 과거의 기록이 쉽게 재소환되어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다른 상충하는 권리들, 즉 검색엔진 운영자의 기업활동의 자유, 일반 대중의 알 권리, 그리고 콘텐츠제공자의 표현의 자유나 미디어 발행의 자유를 제압하는 상위의 권리는 아니다.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는 이들 대립하는 다른 주체들의 여러 자유의 이익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GDPR 제17조가 삭제권의 행사요건을 6가지로 한정해서 엄격히 정해 놓고 있

27) EDPB (2020. 7. 16). Belgian DPA imposes €600,000 fine on Google Belgium for not respec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a Belgian citizen, and for lack of transparency in its request form to delist. <National News>. URL: https://edpb.europa.eu/news/national-news/2020/belgian-dpa-imposes-eu600000-fine-google-belgium-not-respecting-right-be_en

고(제1항),²⁸⁾ 이에 더하여 5가지 정당한 목적²⁹⁾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제3항)은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다. 아쉽게도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삭제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법령에 의한 수집의 경우에만 오직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36조). 이 규정에 의하면, 자칫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개인정보를 원하는 대로 삭제할 수 있는 규범적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28) ① 처리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때 ② 동의를 철회하고, 다른 합법적 처리근거가 없는 때 ③ 사후적 처리거부권을 행사하고, 다른 우월적인 정당한 근거가 없는 때 ④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때 ⑤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되어야 하는 때 ⑥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보를 수집한 때에 한해서 삭제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

29) ① 표현의 자유권 및 정보의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②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③ 공중보건을 위하여 ④ 자료보존, 학술적 혹은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삭제청구권이 이들 목적 달성을 불가능 혹은 심각하게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법적 권리를 설정, 행사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